

신행정수도건설과 충청권의 역할

송 두 범

지역개발연구부장(dbsong@cdi.re.kr)

1. 들어가는 말

..... 통일신라 이후 한반도는 지난 천 여년 동안 수도 일극(一極)으로의 중앙집중, 중앙집권주의의 역사로 일관해 왔다. 그 천년의 역사는 광복 후 반세기의 한국 현대사에서 더욱 심화되고 악화됐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해서 사람도, 수도도 운신하기조차 어렵게 된 게 오늘의 서울이다. 시간도 우리 편은 아니다. 어느 날 분단의 경계선이 헐리기라도 하면 대거 남하할 북녘 동포들이 어디로 몰려들 것인가.

수도권 집중을 이대로 둔 채 교육·주택·범죄·청소년·공해·교통 및 빈부 문제 등의 해결을 운운하는 것은 위선 아니면 맹목이다. 우리는 21세기 말에 제3세계 징후군인 인구 2,000만명의 초거대도시 서울의 출현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분권화, 다극화, 분산화는 한반도의 밀레니엄 과제이자 시급한 오늘의 과제다.¹⁾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서울의 과포화,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절반쯤은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충청권으로서는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호기가 되고, 영호남 또한 국토의 변방에서 새로운 수도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비대해진 몸집을 줄여 진정한 국제도시로서 재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논의가 대통령선거공약이었다는 점과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했다는 점 등 이러 저러한 이유로 모든 국민의 축복 속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에관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첫단추는 무사히 꿰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안 통과가 행정수도건설을 성공적으로 담보해줄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역사인식과 더불어 정책담당자들의 소명의식, 국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충청권으로 던져졌다. 따라서 역사적인 신행정수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1) 최정호, 동아일보, 최정호칼럼, 2003.11.13.

위해 충청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신국토구상과 신행정수도 건설

2004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2020년을 겨냥한 미래 국토발전의 새로운 골격인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을 발표하였다.

신국토구상에서는 세계적 변화추이, 동아시아의 발전 및 남북관계의 진전, 고속형 국토로의 전환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 등 지방화시대의 제도적 기반구축이 마련됨에 따라 신국토 패러다임²⁾에 기초한 5대 전략³⁾과 7대 과제⁴⁾를 제시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5대전략에는 다핵형 국토건설, 7대 과제에는 지방분산 국가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에 속해있다.

다핵형 국토건설의 핵심은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광역개발벨트 및 관광거점 개발, 수도권외의 계획적 관리이고, 지방분산 국가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의 핵심은 신행정수도건설,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동서간 도로 등 교통·통신체계 정비, 고속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 및 수혜지역 확대 등으로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가 주요관련부처이다.

신국토구상에서는 1394년 8월 24일 이래 610년이란 긴 세월동안 수도로서 우리 나라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서울의 일극집중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인구 50만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분권·분산형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고, 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며, 서울중심적 가치관의 일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 주요도시로부터 2~3시간 이내의 접근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지역별 특성화발전과 수도권의 질적발전 여건조성이 가능하며, 국토 동서축 및 동해안축 등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지역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려 특성화된 발전을 하면서 지역간 연계 발전, 균형발전을 통한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 국토관리,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기회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시각 등
- 3) 혁신형 국토구축, 다핵형 국토건설, 네트워크형 국토형성, 지속가능형 국토관리, 글로벌형 국토경영
- 4)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간연계발전 추진,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농·산·어촌의 혁신, 지방분산 국가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 친환경적국토관리, 개발거점 확충 및 광역개발벨트 조성, 신국토구상 관련계획정비 및 추진

그러나 수도권 자치단체 및 의회⁵⁾, 보수 중앙언론⁶⁾ 등의 신행정수도건설 반대목소리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행정수도 이전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수도 이전 반대결의대회 개최 및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 등의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의회가 주장하는 행정수도건설 반대주장의 핵심은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행정수도건설의 정치적 이용중지, 수도권의 광역화로 인한 영·호남, 강원지역 소외가속, 수도권지역의 대북안보 붕괴 및 불안간 증폭, 통일시대 대비, 수도권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파탄, 수도권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수도이전문제는 현정부에 들어와서 논의되던 문제가 아니라 1970년 초에 이미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구체적인 후보지가 선정되는 단계에까지 연구되었던 과제이다. 그동안 수많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일극집중과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심화현상은 오히려 심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책이 선거과정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수도권에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⁷⁾

세계의 예에서 보듯이 한 나라의 수도가 영원히 한 도시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많은 나라에서 수도권과밀, 정치적 이유, 국가균형발전 등 그 나라의 여건과 사정에 의해 수도를 이전했고 지금도 건설중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집중율⁸⁾은 보이고 있

5) 서울시 의회에서는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부작용으로 ①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상권이 침체된다. ② 이전예정지 여러곳에서 부동산 투기문제와 민원발생이 극심하다. ③ 주택, 교육, 교통대란이 발생된다(주말부부 대량 발생) ④ 수도권 지역에서 대북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다. ⑤ 외교, 관광, 통상면에서의 국제적인 혼선과 수도권지역의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 ⑥ 이전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⑦수도이전은 서울시민뿐 아니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⑧남북한 통일시대에 수도를 남쪽으로 逆行함은 상식에 어긋난다.

6) 金正剛은 “서울의 수도포기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일종의 叛逆(반역)이다. 遷都후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은 서울은 쇠락하고 권력자와 재벌 등 상층 지배층이 빠져나가 버린 서울에는 하층민과 실직자만 우글거릴 것이며, 그 결과 서울의 부동산 값은 폭락할 것이다. 서울의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 서울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여신이 모두 천문학적인 부실채권으로 변할 것이다. 이 천문학적인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은행의 파산과 경제의 구조적 부실화가 잇따를 것이며 그 결과는 금융공황으로 폭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극단적인 반대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김정강, 월간조선, 2004.1).

7) 수도는 천년만년 서울에 있어야 되고 지방이야 망하건 말건 수도권의 기득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일부수도권 보수언론들은 침소봉대에 거두절미, 말꼬리잡기, 본말전도 등 교묘하고 집요하게 안티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현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정권이 싫으니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게 싫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한다(김재근, 대전일보, 데스크광장, 2004.2.3, 23면).

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앞서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앙집권주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수도권 기득권의 지방분산이라는 점에서 그 만큼 수도권 등의 반대론자들의 완강한 반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역간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며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수도기능을 도외시한 수도이전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행정수도 이전의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안은 충청권에서는 정부행정서비스의 이전보다 전략산업 육성이 효율적, 수도이전비용으로 낙후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대안, 충청권내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낙후지역 전략산업의 육성 등 대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그러나, 신국토구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기형적 국토공간을 개편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진해야될 시대적 과업인 것이다.

3.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시행령의 주요내용

1)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4년 1월 16일 공포되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예정지역 지정 등 신행정수도건설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장관·민간인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소속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또한 이 위원회 소속으로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인력·자료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둘째,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세입은

8) 2002년말 현재 수도권인구는 약 2,288만명으로 전국인구의 47.2%(일본 32.4%, 프랑스 18.7%, 영국 12.2%)가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집중.

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서울경제브리프, 제24호.

이전청사 매각대금,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여, 청사부지매입 및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등에 지출한다.

셋째, 위원회는 이전기관, 이전방법, 이전시기 및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마련하여 대통령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의, 공청회 등을 거친 다음 대통령승인 전에 국회동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넷째, 예정지역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결과와 건설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균형 개발효과, 환경성·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다섯째, 조사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한다.¹⁰⁾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의 신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행정수도와 인접지역간의 기능적 연계, 광역시설 정비 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여섯째, 사업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와 관련된 지방세·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및 대부 등 지원 가능토록 한다.

일곱째, 타 사업추진 원활화 방안으로 신행정수도의 원활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 건설자재 수급안정대책, 이전종사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한다.

2)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시행령(안)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공포(2004.1.16.)됨에 따라 그 시행(2004. 4.17.)에 맞춰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하였으며, 동 시행령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정지역 등의 지정, 이전계획·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시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개최목적, 개최일시, 장소 등에 대해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둘째, 이전계획의 내용중 이전대상 주요국가기관, 이전방법 및 시기 등과 건설기본계획의 내용중 도시규모, 도시형태, 상징과 이미지 등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다.

셋째, 수립된 이전계획중 이전비용 추정치의 100분의10이내의 변경과 건설기본계획중 도시규모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

10) 당초 정부안에 있던 2003년 1월1일을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한 토지보상액 산정 규정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예정지역 지정 시점(2004년 하반기 예정)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뀌었다.

및 대통령 승인 없이 위원회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는 기후·지형 등 자연환경여건, 인구·가구 등의 분포, 기반시설, 재해현황, 토지이용현황, 공법상제한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섯째,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관련하여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면적규모를 도시지역외의 농지와 임야의 경우 현행 1,000제곱미터와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각각 200제곱미터 이하로 강화한다.

여섯째,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최장 10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가능)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

일곱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37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해당 인·허가 전에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다.

여덟째, 주변지역 중 취약지구에 대하여는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70퍼센트까지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신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광역계획권은 동·읍·면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다.

열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의 명칭·시행자·시행기간 등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열한째, 신행정수도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도시와의 효율적인 기능연계를 위해 필요한 광역도시계획시설중 위원회가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열두째,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특별회계의 내용중 회계의 연간계획의 수립, 100억원 이상의 차입 및 지출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열세째, 특별회계를 지출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이전계획에 포함된 주요국가기관이외에 국립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건축법이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중 위원회가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충청권의 역할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하는 수도권지역 등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충청권 3개 시도에서는 신행정수도의 자გი지역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보다는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공동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사업이나, 경인운하사업 등의 예에서 보듯이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완공이전에 사업자체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충청권 3개 시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한 충청권의 역할을 개략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충청권 자치단체·의회·시민단체간의 강한 협력체제 구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통과와 환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충청권 3개 시도는 새로운 고민에 빠진듯하다. 충청권 3개 시도의 경우 겉으로는 어떤 지역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심 신행정수도가 우리 지역에 입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주민들보다 오히려 행정기관이 더욱더 간절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입지결정에 따른 책임이 없지만, 행정기관은 신행정수도의 입지결정에 따른 책임소재가 행정기관의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자გი지역에 입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단계 생각을 진전시켜 보면 과연 행정수도의 입지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수도가 입지하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야 할 것이고, 행정수도가 입지하는 자치단체 역시 그만큼의 땅을 수도특별행정구역에 편입시켜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행정수도의 입지로 인해 주변지역의 발전과 자치단체 전체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행정수도의 입지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충청권내 특정지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충청권내 3개 시도의 역할은 행정수도가 원활하게 충청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협력체제는 3개 광역자치단체 및 의회,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 시민단체, 주민들이 중핵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재는 ‘충청권행정협의회’ 차원에서만 느슨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3개 시·도, 시·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범충청권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단일의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3개 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장, 지역NGO 대표자들이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공동 노력하고 입지선정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한 결과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에는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2) '지역분과위원회' 개편을 통한 입지결정의 공정성 확보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자문위원회내에는 충청권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통과 등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분과위원회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원·교수·전문가 등 실무형인사를 중심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구성하되, 3개 시도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입지결정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편된 지역분과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대전사무소(추후 충청권사무소로 개칭)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산하에 두고, 3개 시도가 행정수도유치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한 지역간 입지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공개적인 학술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평가단, 평가위원회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3) 지역NGO가 중심이 된 행정수도의 정치적 이용감시단 결성

신행정수도충청권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은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의 노력이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위는 충청권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신행정수도건설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수도건설이 몇몇 정치인들의 치적으로 과대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NGO를 중심으로 한 감시단을 결성하는 방안모색도 필요하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에 행정수도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도권 등 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에 행정수도건설의 폐해가 시작도 하기 전에 발생하고 있다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역NGO들은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유치공약은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언론이 주축이 된 입지결정과정 홍보

신행정수도충청권 건설과 관련한 지역언론의 역할은 괄목할 만하다. 특히, 중앙언론의 무관심속에서도 지역언론들은 신행정수도건설공약이 발표되는 순간에서부터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시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반대논의에 대한 부당성과 함께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까지 검토하였다.

법률제정과 함께 지역언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충청권의 입지갈등이나 부동산 투기, 수도권언론의 반대에 대한 논리적 반론, 정치인들의 유치공약등을 견제하는 것은 지역언론의 몫이기 때문이다. 특히, 입지결정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충청권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치단체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에 기반을 둔 지역언론의 경우 지나친 애향심에 기초한 기사는 지역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지역NGO 등의 지속적 관찰과 견제가 필요하다.

5) 행정수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신뢰확산 노력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없었던 일로 덮어둘 것이라는 우려와 경험을 예로 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상당수의 충청권 주민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듯 하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의 경우 정권의 홍보용으로 활용되어온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다음 정권에서도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충청권의 몫이다.

충청권주민들이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청권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세계의 행정수도를 대상으로 상설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사진 및 여행기공모전을 개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충청권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바라는 신행정수도(가칭)”라는 제목의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작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및 책자발간도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일견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정부정책들이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져간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신행정수도건설을 정권을 넘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우리 나라의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은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법률안의 국회통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천 여년동안 지속되어온 중앙집권주의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반대 또한 집요하게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반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도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신행정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충청권 3개 시도가 자გი지역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보다는 협력하고 제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충청권에서 해야할 역할을 제시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충청권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충청권 자치단체·의회·시민단체간의 강한 협력체제 구축, '지역분과위원회' 개편을 통한 입지결정의 공정성 확보, 지역NGO가 중심이 된 행정수도의 정치적 이용감시단 결성, 지역언론이 주축이 된 입지결정과정 홍보, 행정수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신뢰확산 노력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의 충청권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충청권의 입지갈등으로 인해 국가대사를 그르치는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지역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충청권이 협력하고 제휴하는 것만이 상생하는 길이고 성공적인 신행정수도건설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2004.1.29.

서울특별시의회홈페이지, http://www.smc.seoul.kr/notice/not_02_list.asp.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홈페이지, <http://www.newcapital.go.kr/>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실행계획(안), 2004.1.

최정호, 동아일보, 최정호칼럼, 2003.11.1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서울경제브리프, 제24호.

김재근, 대전일보, 테스크광장, 2004.2.3.

김정강, 월간조선, 2004.1